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8.3.22(목) 16:00

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#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발의자 : 임병운 의원 등 6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### 3. 제안 이유
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가. 산림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나. 산림교육센터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
- 교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과 사용료 납부·면제·반환 기준

다. 효율적 산림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라.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마. 위탁운영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#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'은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

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